

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서식] <개정 2017. 10. 19.>

[] 석유정제업 [] 개 시
[] 석유수출입업 [] 휴 업
[] 국제석유거래업 [] 폐 업
[] 석유판매업
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

신고인: 대표자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상호, 전화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

사업의 개시: 년 월 일 사업개시

사업의 휴업·폐업: 기간, 사유

사업의 재개시: 년 월 일 사업 재개시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

첨부서류: 없음, 수수료: 없음

행정정보 공유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유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